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월 10일, 박용갑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2. 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1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7.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대체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박용갑)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VI. 검토의견

2. 조류 유인가능시설 이전명령 근거 마련 등(박용갑의원안 (2207429)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 제56조제5항¹⁾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시설에 대해서 국가 등이 이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명령 시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시설 관련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조치가 미비한 법 제56조제5항 위반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

1)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6조의4(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 수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금지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금지시설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금지시설 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u> <u>1.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u> <u>2. 이전비용이 그 물건이나 시설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u>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설></u>	<u>나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u> <u>④ 제1항과 제2항 외에 금지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u> <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금지시설 등의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u> <u>⑥ 제5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69조(과태료)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공항시설법」 제56조제5항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²⁾은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양돈장, 과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비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항에 해당 조항을 위반한 시설이 1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③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다만, 사과·배·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2024년 공항별 조류유인시설 현황 〕

구분		계	인천	김포	제주	청주	양양	군산	원주
총계		115	6	29	-	6	15	6	8
3km 이내	계	96	5	28	-	5	15	6	6
	양돈장	6	-	-	-	-	-	-	2
	과수원	40	2	-	-	3	15	4	2
	잔디재배	1	-	-	-	-	-	-	-
	드라이브인 음식점	-	-	-	-	-	-	-	-
	식품가공공장	43	3	28	-	2	-	2	2
	승마연습장	2	-	-	-	-	-	-	-
	경마장	-	-	-	-	-	-	-	-
	장터	-	-	-	-	-	-	-	-
	야외극장	-	-	-	-	-	-	-	-
	조류보호구역	2	-	-	-	-	-	-	-
	사냥금지구역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	-	-	-	-	-	-
	계	19	1	1	-	1	-	-	2
3~8km	조류보호구역	10	1	-	-	-	-	-	-
	사냥금지구역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9	-	1	-	1	-	-	2

구분		김해	대구	광주	울산	여수	무안	포항	사천
총계		2	4	2	8	4	12	3	10
3km 이내	계	1	-	-	5	3	12	1	9
	양돈장	-	-	-	-	1	3	-	-
	과수원	-	-	-	4	-	7	-	5
	잔디재배	-	-	-	-	-	1	-	-
	드라이브인 음식점	-	-	-	-	-	-	-	-
	식품가공공장	1	-	-	1	1	1	-	2
	승마연습장	-	-	-	-	1	-	1	-
	경마장	-	-	-	-	-	-	-	-
	장터	-	-	-	-	-	-	-	-
	야외극장	-	-	-	-	-	-	-	-
	조류보호구역	-	-	-	-	-	-	-	2
	사냥금지구역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	-	-	-	-	-	-
	계	1	4	2	3	1	-	2	1
3~8km	조류보호구역	-	3	-	3	1	-	2	-
	사냥금지구역	-	-	-	-	-	-	-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1	1	2	-	-	-	-	1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이와 같은 위반시설에 대한 이전명령 근거를 신설하면서
수용·사용 및 국공유지 교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미비하였던

위반시설 등 설치 시 제재조치로서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항 인근 조류 유인을 예방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도모하고, 지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6조의4제1항은 이전명령 등 처분의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범위의 처분 주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56조의4제1항은 이전명령 등 조치의 대상을 ‘금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56조의4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³⁾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을 참고한 것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으로 보이고, 유사입법례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보상
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⁴⁾하는 방식을 택하
고 있음.

그리고 안 제56조의4제3항은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에 대한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전명령을 규정
하고 있는 유사입법례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별도
로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어 보임.

또한, 제4항에 따라 토지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것인데, 동법은 수용에 앞서 사업인
정을 받을 것을 규정⁵⁾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사업인정의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
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
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상이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56조의4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금지시설 등의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교환을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이는 주로 협의 매수와 함께 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수를 위해 지불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안 제69조제1항제8호는 미비한 제56조제5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전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시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시설묘지·시설화장시설·시설봉안시설 및 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1조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조류 유인시설 설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 및 이에 따른 보상 근거 마련에 동의함.

다만, 토지수용은 타법 사례⁶⁾(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와 같이 협의매수를 통해 이전을 유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 초래를 방지하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 교환 주체에서 권한이 없는 공항운영자와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법제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을 의미하고,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로서 헌법 제23조⁷⁾에 따라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구체화 한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이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연안관리법」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것임⁸⁾.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려는 경우는 법 제56조제5항의 위반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손해에 관한 손실보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56조의4에서는 시설 이전 등의 조치 명령(제1항), 토지 등의 수용·사용(제3항)의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외에 무엇이 있는지 가급적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년판) p 540

3)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자는 금지시설(사유재산)에 대하여 이전명령, 이전비용 보상, 수용·사용,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국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²⁹⁾ 및 별표에 따라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는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나, 상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조류유인시설 부지 또는 시설은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없음. 이를 위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등)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협의 매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 있음.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